<<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고,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를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때는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 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계약목적

세진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입소정원 : 28인(남・여)

단,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는 외박 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 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 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입소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 또는 3~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은 대상자
-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입소하고자 하는 자

다. 입소절차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 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 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 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 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 · 의무와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라.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 노인은 시설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 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 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 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 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 노인은 직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 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4. 모집방법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방문 요양 서비스 및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주, 야간 보호 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 기관을 통한 모집
- 블로그,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모집.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 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이용절차(모집방법)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 생활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 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 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 · 의무와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2. 구비 서류

1. 이용에 관한 계약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건강진단서 1부(결핵 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 이내 검진 결과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 1등급~5등급의 일반 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 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5등급의 경감 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 의 8% 또는 12%를 부담한다.

㉰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외의 일반 대상자는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등급별 월 이용료 산정표】

◆ 본인부담금 조견표 ◆ [입소자 수 / 요양보호사 수 = 2.1명] 2026.1.1부터 적용

등급 (인력배치)	일일수가	수급 일수	수급총액	비급여 (식대)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					
					일반(20%)	부담총액	경감(40%)12%	부담총액	경감(60%)8%	부담총액
1등급	93,070	30	2,792,100	225,000	558,400	783,400	335,000	560,000	223,300	448,300
2등급	86,340	30	2,590,200	225,000	518,000	743,000	310,800	535,800	207,200	432,200
3~5등급	81,540	30	2,446,200	225,000	489,200	714,200	293,500	518,500	195,600	420,600
등급 외	50,000	30	1,500,000	225,000	본인 전액 부담 월 1,725,000원(30일 기준)					

※ 식대는 간식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식사재료비 : (1일(3식) 7,500원 ×30일 = 225,000원)

㉯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 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특별 보호 시 발생 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내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가변동 적용

나. 건강보험공단 판정평가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적용

다. 물가의 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 비용의 변동에 따른 적용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가변동
  건강보험공단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부담금 율 변경, 유효기간 만료)
  → 보호자 상담(유선, 안내문, 면담 등) → 변경계약 또는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유선, 안내문, 면담 등) → 변경계약

【이용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퇴소)

① 이용자(보호자)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문자 등)로 이용료 미납내용을 알리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시설장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소한다.